##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」 **의원발의 관계기관 검토의견**

※ 담당자 : 강서구(문화체육과 오세웅 02-2600-6634)

의원발의 조례	검 토 의 견	
기간일이 그네	수 정 안	사 유
3. 참고사항 가. 관계법령:「서울 특별시 강서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」제5조	별시 강서구 청년지원	- 청년의 정의 및 문화에 관련한 정책, 단체 활동, 시설 등의 참여확대, 권익 증진, 청년발전 등을 규정한 제2조를 참고사항 조항에 추가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. 1. "청년"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"강서구"라 한다)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"청년"이 란 <u>만 19세</u> 이상 39세 이하까지 에 <u>주민등록을</u> <u>두고있는 사람을</u>	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 청년	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 <b>은</b> 청년	보조사 추가